

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일부 개선(안)

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.

2. “금품,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” 를 금품, 향응 등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“로 한다.
3. “금품,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” 을 “금품, 향응 등(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” 으
로 한다.

개 선 비 교 표

현 행	개 선
<p>2. 계약의 체결. 이행과정(완료 이후도 포함)에서 관계직원에게 직.간접적으로 금품.향응 등의 <u>뇌물이나</u>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부산광역시,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등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</p> <p>가. (생략) 나. (생략) 다. (생략) 라. (생략)</p>	<p>2. 계약의 체결. 이행과정(완료 이후도 포함)에서 관계직원에게 직.간접적으로 금품.향응 등(<u>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</u>)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부산광역시,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등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.</p> <p>가. (현행동일) 나. (현행동일) 다. (현행동일) 라. (현행동일)</p>
<p>3. 입찰,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, 향등 등 <u>뇌물</u>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,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,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.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</p>	<p>3. 입찰,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, 향등 등(<u>친인척 등에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</u>)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,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,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.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</p>